

민간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

가. 감사개요

▣ 감사기간 : 2014. 9. 22. ~ 12. 12. (58일간)

▣ 감 사 반 : 감사담당관 등 6명 (실지감사)

▣ 감사내용

○ 21개 단체(공공기관 11, 민간단체 10)를 대상으로 2011~2014년 기간 동안의 민간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 전반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 : 백만 원, 건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	모범 사례
					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통보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27	27,856	-	-	-	7	27,856	7	6	2	-	12	1

* 수사의뢰 1건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<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정책관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면세액 미납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○○○협회는 문화부로부터 「◇◇◇◇◇◇」 사업을 수탁받아 사업수행대가로 부가가치세 162,872천 원을 포함한 1,791,587천 원을 수령 - 그러나 동 협회는 수탁사업 수행과정에서 매입거래행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69,676천 원을 공제받아, 문화부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162,872천 원 중 93,196천 원만 납부하고 공제받은 69,676천 원은 협회의 영업이익으로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탁사업 수행과정 중 매입행위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자신의 영업이익으로 처리한 69,676천 원 회수

<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문공동배달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구)신문유통원(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합)은 신문공동배달센터 임차보증금 및 장기대여금으로 국고보조금 27,661,107천 원을 지원받음(2006~2008) - 동 센터의 통·폐합에 따라 회수한 임차보증금 및 장기대여금 17,554,37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010년 738개소이던 신문공동배달센터는 통·폐합으로 2014년 10월 현재 370개소만 운영 - 앞으로 동 센터 통·폐합으로 회수될 임차보증금 및 장기대여금은 10,106,740천 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반납하지 않고 있는 신문공동배달센터 임차보증금 및 장기대여금 17,554,370천 원 회수 - 앞으로 동센터 통폐합으로 발생할 임차보증금 및 장기대여금 10,106,740천 원도 회수 조치 강구

<한국문화예술위원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자(□□□)는 2013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연출연료(10,400천 원)를 공연경비로 집행 - 공연경비로 집행한 10,400천 원 중 3,580천 원은 집행 증빙서류 미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행 증빙서류가 미비한 3,580천 원 회수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자부담 적용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569건을 공모로 선정하고 14,590백만 원 지원 - 위 보조사업 중 123건은 자부담율이 10% 미만으로 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 10%이상 규정 미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 선정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 10%이상 규정 준수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잔액 정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정산 완료 전 반납 - 위 반납액에 대해 수입결의를 하지 않은 채 미확인 상태에서 결산시점에 회계부서에서 일괄 수입 처리(2013년 251건, 94백만 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완료 후 반납하도록 보조사업 관리 철저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술전용공간 임차 지원사업 임차계약 업무 소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■■협회 ▲▲지회에서 예술전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임차보증금 50백만 원에 임차계약 - 동 건물 임의경매로 임차보증금 12,411천 원을 회수 못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보증금 회수 대책 강구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랑티켓 사업 추진 및 관리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외계층의 문화복지확대를 위한 사랑티켓 사업의 수혜자가 특정계층에 편중(65세 이상 7.6%, 초등생 이하 61.5%) - 또한, 동 사업은 문화누리티켓 등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과 중복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혜자가 편중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방식 개선 및 성격이 유사한 타사업과 차별화 강구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알기 쉬운 「정산 요령집」 제작·보급으로 정산업무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정산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 알기 쉬운 「정산요령집」을 제작 보급하여 정산 관리 업무 개선에 기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모범사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산업무 개선 관계자 포상, 성과급 지급 등 조치

<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▽▽▽▽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 수익금 처리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하는 교부조건을 부여하도록 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※ 감사원은 위 사업 추진 시 공연장 입장수입금을 수익금으로 간주 - 수익금이 사업추진을 위한 대관료, 홍보비 등 총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만 회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기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약 25억 원(2011~2013)의 수익금이 지자체 세입 또는 보조사업자 수입금으로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회수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교부조건 부여

<국립발레단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레공연 보조금 정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자(◁◁◁)는 제1회 ◀◀◀◀◀◀◀◀ 등 4개 공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연출연자에게 출연료 27,000천 원을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공연경비로 집행하였다고 주장 - 그러나, 보조사업자(◁◁◁)는 위 27,000천 원을 공연경비로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연경비로 집행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 27,000천 원 회수

<국립현대무용단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대세트 보관창고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조치 소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보증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2011년 무대세트 보관 창고 임차계약(보증금 35백만 원)을 체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권 보전 조치

<국립예술단체연합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건 353천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(호프집 사용 4건, 23시 이후 사용 3건, 공무 외 사용 1건) - 출장 시 지급대상이 아닌 도시 이동 간 택시비 23천 원을 운임비용으로 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 및 주의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정하게 집행 한 국고보조금 376천 원 반납 - ‘기관주의’ 조치
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의 전기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활용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요금제 선택에 따른 요금변화 미검토로 3년간 약 5,811천 원 예산 낭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요금제 변경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물 종합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할 건물 종합관리 용역계약을 4년간 (2011~2014년)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(1,589백만 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기관주의’ 조치

<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무실 임차 국고보조금 관리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구)☆☆☆☆☆☆의 해산에 따라 동 재단에 사무실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170백만 원을 이관받아 - 진흥원의 사무실·교육장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34,92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보증금 잔액 34,920천 원 반납

<한국사립박물관협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립박물관 ★★★ 채용 심사 부적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사립박물관 ★★★ 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용 공고한 자격기준에 미달자한 자를 서류심사에 합격 (2013~2014년, 104명)시키는 등 ★★★ 채용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★★★ 채용 철저

<영화진흥위원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p>○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화 '▷▷▷▷' 순제작비 약 1,000백만 원 중 250백만 원은 해외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(주)▶▶에 영화발전기금 240백만 원 지원('12.6.26.) - (주)▶▶는 2013.7.8. '▷▷▷▷' 영화촬영을 종료하고 2013.7.19. 제작완료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- 그러나 (주)▶▶는 유치하기로 한 해외자금 250백만 원 중 70백만 원만 영화제작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기금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 확정 	<p>○ 주의 및 개선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금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정산확정한 관련자 '엄중경고'조치 - 해외자금 유치 확인 후 기금지원 등 사업추진 절차 개선대책강구
2	<p>○ 2012년 ♠♠♠♠♠♠ 지원사업 관리 및 정산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2년 ♠♠♠♠♠♠ 행사를 위해 (사)♠♠♠♠♠♠에 영화발전기금 20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(사)♠♠♠♠♠♠는 동 보조금 전액을 (주)♠♠♠♠♠♠에 재교부하는 등 「영화단체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」 및 집행지침을 위반 ※ 위 규정 및 지침에 기금(보조금)은 제3자에게 40%이상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 - 보조사업자가 부담하기로한 891,087천 원 중 624,750천 원만 부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정산확정 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금(보조금)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검토 없이 정산확정한 관련자 '엄중경고' 조치
3	<p>○ 2011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<♡♡♡> 정산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♡♡♡♡♡♡♡♡에 영화<♡♡♡> 홍보지원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30백만 원 지원약정을 체결하고, 약정 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음. - ♡♡♡♡♡♡♡♡는 약정기한(최초상영 종료 후 4개월이내)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지원결정 취소 조치를 하지도 않고, 지급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 소홀 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결정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자 '주의'조치
4	<p>○ 2013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정산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술영화전용관에 지원(25개관 1.059백만 원)한 영화발전기금 중 30%이상은 홍보 및 프로그래밍비로 사용하기로 보조사업자와 약정을 체결 하였으나 이중 5개업체는 동 규정을 위반(홍보비 등 30% 미만사용) 하였는데도 정산 확정 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산업무 철저 조치

<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주요도서전 한국관 설치업체 계약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접보조사업자인 ㅇㅇㅇㅇㅇㅇㅇㅇ는 2013년 해외주요도서전에 한국관 디자인 및 설치업체를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로 선정하였으나 ①입찰공고기간(40일→12일공고) 및 방법(전자조달시스템 활용→협회홈페이지에만 공고)등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②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내부직원만으로 구성 운영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 소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'엄중경고' 조치

<한국관광협회중앙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고보조금 및 공익사업적립금(♣♣♣) 사업 계약 체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3년동안(2011~2013년) 2천만 원 이상 사업 32건(4,409백만 원)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, 5천만 원 이상 16건(3,659백만 원)은 신문광고 절차 미준수 등 계약관계 법령 및 내부 회계규정 위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사업 계약업무 철저

<한국여행업협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발급 수익금 정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고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반납 또는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국고보조사업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발급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60,449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협회에서 별도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정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수익금 60,449천 원 반납

<한국방문위원회 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(안)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관광활성화 보조사업 계약체결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1~2013년, 2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71건(7,994,149천 원)을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 체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사업 계약업무 철저